

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철도) 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특별시고시 제287호(1981.7.30.)로 도시계획시설(철도:정거장)이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181호(1983.3.29.)로 지적승인된 서대문구 홍제동 161-1일대 도시계획시설(철도:정거장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26년 6월 11일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

1. 변경 결정 취지

- 지하철 3호선 홍제역 2번 출구에 교통편의시설(에스컬레이터)를 신설하여 노약자,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도시계획시설(철도:정거장)을 결정(경미한 변경)하고자 함.

2.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철도) 결정(경미한 변경) 조서

- 도시계획시설(철도:정거장) 결정(경미한 변경) 조서

구분	시설명	시설의 세분	위치	면적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변경	철도	도시철도 (홍제역 정거장)	서대문구 홍제동 161-1 일대	4,100	증) 68	4,168	서고시 제287호 (1981.07.30.)	· 경미한 변경 · 도로(중복결정) (4,100m ² → 4,168m ²)

○ 변경 사유서

시설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철도	.면적 변경 - 4,100m ² ⇒ 4,168m ² (증 68m ² , 증 1.7%)	.지하철 정거장 교통약자(노인, 임산부) 이용편의를 위한 홍제역 2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에 따른 도시계획시설(철도:정거장) 면적 변경

3. 관계도면 : 붙임 참조

※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,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4. 열람장소 : 서대문구 도시계획과(☎ 330-1644)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.

